

7)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미산입

(2) 호봉승급: 승급기간에 미산입

나) 결원보충: 결원보충 불가

다) 보수

(1) 봉급: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2) 수당: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8)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와의 관계

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은 대부분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나, 그 밖의 사유에는 개인이나 불법 단체에 의한 납치 또는 공무원 본인 스스로 잠적하는 등 내·외적 요인까지 모두 포함됨

나) 교육공무원의 생사 여부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것의 원인이 외부에 의하지 않고, 공무원 스스로가 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직장이탈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의 규정을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라. 법정의무수행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4호

2) 휴직사유: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3) 휴직의 요건(대상): 남·여 교육공무원

4) 휴직기간 및 횟수

가) 법정휴직기간: 의무복무기간

나)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의무복무기간

(2) 휴직발령기준일: 병역휴직과 동일

(3) 휴직의 횟수: 병역의무와 동일

5) 휴직신청서류: 병역의무와 동일

6) 복직절차

가)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경우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함.

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복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음

7) 기타

가)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1) 경력평정: 산입

(2) 호봉승급: 호봉승급기간에 포함

나)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보충